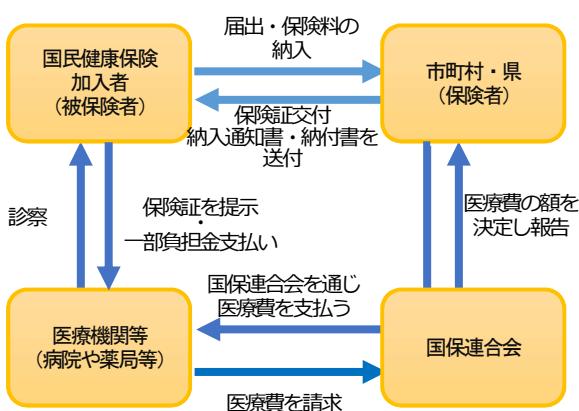


国民健康保険（こくほ）のしくみ

I. 国民健康保険（こくほ）とは

国民健康保険とは、病気やケガをしたときに安心して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加入者が普段から保険料（税）を納め医療費の負担を支えあう、助け合いの制度です。

都道府県と市町村が協力して運営しています。



II. 国民健康保険（こくほ）に加入する方

日本では、すべての方が何らかの医療保険に加入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住民票に記載された外国人の方も、以下の①～⑥の方を除き、すべての方が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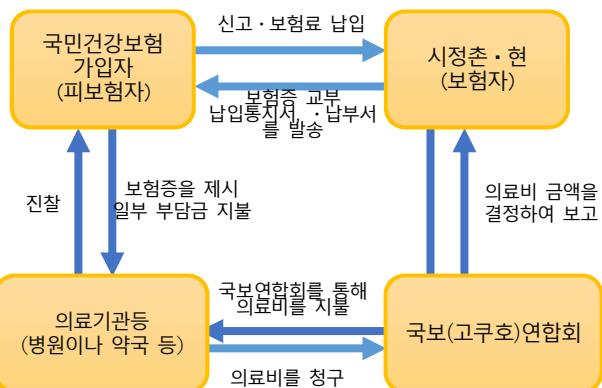
- ① 職場などの公的医療保険に加入している方、またはその扶養家族の方
- ② 生活保護を受けている方
- ③ 75歳以上の方
(後期高齢者医療制度の適用となります)
- ④ 在留資格が「特定活動」で、医療を受ける方、またはその方の日常生活上の世話をする方
- ⑤ 在留資格が「特定活動」で、観光や保養等を目的とし、1年を超えない期間、日本に滞在する方と、その方に同行する配偶者
- ⑥ 日本と社会保障協定が締結されている国の社会保障制度に加入していた、協定国の政府から「適用証明書」の公布を受けている方

国民健康保険(高科号) システム

I. 国民健康保険(高科号)이란?

국민건강보험(高科号)이란, 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가 평소 보험료(세)를 납부하여 의료비 부담을 돋는 제도입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I. 国民健康保険(高科号)에 가입하는 方法

日本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민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하기의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① 직장 등의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 ② 생활 보호를 받으시는 분
- ③ 75 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적용됩니다)
- ④ 체류자격이 [특정활동]이고, 의료를 받는 분, 또는 그분의 일상생활을 돌보시는 분
- ⑤ 체류자격이 [특정활동]이고, 관광이나 휴양 등을 목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일본에 체류하시는 분과 동행하는 배우자
- ⑥ 일본과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있는 협정국 정부로부터 [적용 증명서] 공포를 받는 분





III. 国民健康保険（こくほ）に 加入するとき、やめるとき

次の場合で、国民健康保険に加入するとき、やめるときなどは、市町村の国民健康保険担当窓口への届出が必要です。

必ず14日以内に届出をしましょう。

1. 加入するとき

- ① 転入してきたとき
(職場などの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ない場合)
- ② 職場の健康保険をやめたとき
- ③ 職場の健康保険の被扶養者から外れたとき
- ④ 生活保護を受けなくなったとき
- ⑤ 子供が生まれたとき

2. やめるとき

- ① 転出するとき
- ② 職場の健康保険に加入したとき
- ③ 職場の健康保険の被扶養者になったとき
- ④ 生活保護を受け始めたとき
- ⑤ 死亡したとき

3. その他 届出が必要な場合

- ① 市町村内で住所が変わったとき
- ② 世帯主や氏名が変わったとき
- ③ 修学のため、別の市町村に住所を移したとき
- ④ 保険証をなくしたときや、汚れて使えなくなつたとき

III. 国民健康保険(고쿠호)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탈퇴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및 탈퇴 시 등은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14 일 이내에 신고합시다.

1. 가입해야 하는 경우

- ① 전입한 경우
(직장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장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 ③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 ④ 생활 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 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 탈퇴해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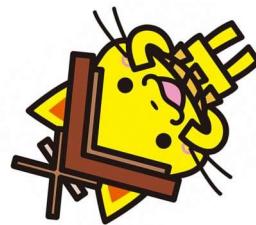
- ① 전출하는 경우
- ②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 ③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 ④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했을 때
- ⑤ 사망했을 때

3. 기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① 시정촌 내에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② 세대주나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 ③ 학업을 위해, 다른 시정촌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 ④ 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및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Memo





IV. 保険証

保険証（国民健康保険被保険者証）は、国民健康保険加入の証明書で、医療を受けるときに必要です。大切に保管しましょう。

- ① 国民健康保険に加入すると、1人に1枚の保険証が交付されます。保険証を受け取ったら、記載内容に誤りがないかご確認ください。
- ② 医療機関等を受診するときは、受付で必ず保険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
- ③ コピーや、有効期限を過ぎた保険証は使えません。
- ④ 保険証の記載内容を自分で書き直したり、貸し借りをすることは禁じられています。
- ⑤ 保険証をなくしたり、破損したときは、市町村の国保担当窓口で再交付の手続きを行ってください。

V. 国民健康保険料（税）

保険料（税）は、国からの補助金などとともに、国民健康保険を支えている大切な財源です。必ず納期限までに納めましょう。

1. 保険料（税）の計算

保険料は、毎年4月から翌年3月までの1年間を単位として、その世帯の4月1日時点に加入している方の人数、前年中の所得、年齢に基づき計算します。

年度の途中で加入した場合や、やめた場合は月割りで計算します。

2. 保険料（税）の軽減措置

会社の倒産や解雇などで失業してしまった場合や、同じ世帯の加入者が後期高齢者医療制度に移行した場合は、保険料が軽減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国民健康保険担当窓口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3. 保険料（税）の納付が難しいとき

特別な事情により保険料（税）の納付が困難なときは、申請により分割納付などもできます。

早めに国民健康保険担当窓口までご相談ください。

IV. 보험증

보험증(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로 의료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 인당 한 장의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증을 수취하셨다면 기재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② 의료기관 등에서 진찰받을 때는 접수처에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③ 복사나 유효기간을 지난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보험증의 기재 내용을 스스로 고치거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⑤ 보험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었을 경우는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서 재교부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

V. 국민건강보험료(세)

보험료(세)는 나라로부터 보조금 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합시다.

1. 보험료(세) 계산

보험료는 매년 4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1 년을 단위로 그 가구의 4 월 1 일 시점에 가입되어있는 분의 인원수, 전년도 소득, 연령에 따라 계산합니다.

2. 보험료(세)의 경감 조치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나 같은 세대의 가입자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로 옮겼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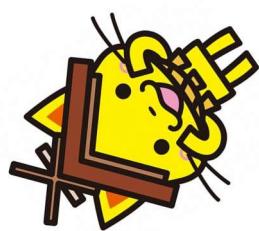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3. 보험료(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보험료(세)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건강보험 담당 창구로 상담해 주십시오.





VI. 国民健康保険（こくほ）で受けられる給付

医療機関等で保険証を提示すれば、その医療費の一部負担金を支払うだけで、医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1. 国民健康保険の医療給付が受けられる場合

- ① 病気や怪我による診察、治療、薬剤などの処方
- ② 病気や怪我による入院及び看護
- ③ 在宅診療（かかりつけ医の訪問診療）及び看護
- ④ 訪問看護（医師が必要と認めた場合）

2. 一部負担金の割合

一部負担金は年齢や所得によって異なります

- | | |
|------------------|-------|
| ① 0～6歳（義務教育就学前） | 2割 |
| ② 7（義務教育就学後）～69歳 | 3割 |
| ③ 70歳～74歳 | 2割か3割 |

3. 国民健康保険の医療給付が受けられない場合

国民健康保険が適用されない治療を受けた場合は国民健康保険の医療給付が受けられません。

- ① 美容整形、歯科矯正、健康診断、予防接種、正常分娩など
- ② 犯罪行為や、故意に病気や怪我をした場合
- ③ けんかや泥酔による病気や怪我
- ④ 仕事中の病気や怪我
(労災保険の対象になります。)

VI. 국민건강보험(고쿠호)에서 받을 수 있는 급부

의료기관 등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①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찰, 치료, 약제 등의 처방
-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및 간호
- ③ 재택 진료(단골 의사의 방문 진찰) 및 간호
- ④ 방문 간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일부 부담금 비율

일부 부담금은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 | |
|-----------------------|----------|
| ① 0~6 세 (의무 교육 취학 전) | 20% |
| ② 7 (의무 교육 취학 후)~69 세 | 30% |
| ③ 70 세~74 세 | 20%나 30% |

3.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미용 성형, 치아 교정, 건강 진단, 예방 접종, 정상 분만 등
- ② 범죄 행위나 고의로 질병 또는 다친 경우
- ③ 싸움이나 만취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 ④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Memo

